

[상속분쟁 - 6] 저작권,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의 상속과 그 지재권으로부터 발생한 수익의

상속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은 소유자의 사망과 동시에 상속됩니다.

지재권도 상속재산으로서 그 가치에 따라 상속세 부과 대상에 해당합니다. 실무적으로

희귀한 사례로 유명디자이너 앙드레 김이 세상을 떠나면서 고인 명의 등록상표권의

증여세 또는 상속세가 문제되었습니다. 국세청은 상속인들에게 7 억원대의 세금을

부과하였고, 그 당부를 다투는 행정소송의 경과와 판결내용이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참고: [상표권 상속](#) 블로그 글 앙드레김 상표권 상속세 사건 서울행정법원 2014. 11. 20.

선고 2014 구합 50552 판결

이와는 다른 각도에서, 흥미롭지만 까다로운 쟁점을 살펴봅니다. 예를 들어, 회사사주 명의로 등록된 지재권을 상속한 상속인 사이에 전체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였고 그 상속분쟁 판결확정까지 상당 시일이 소요된 경우, 그 동안 발생한 저작권료, 상표 또는 특허 로열티 수입 등 상속대상 지재권으로부터 발생한 수익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문제됩니다.

상속재산에서 생긴 수익도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인지 아니면 상속재산과는 별개의 재산으로 볼 것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최근 서울고등법원 2015. 4. 16. 선고 2014 나 47773 판결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재산에만 국한되고** 상속개시 후 발생한 상속부동산의 차임 등 **상속재산의 과실**은 상속개시 당시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어서 **상속인들이 상속분에 따라 취득하는 그들의 공유재산일 뿐** 그 성격상 상속재산 자체는 아니다.

그러므로 공동상속인들 전원이 상속재산의 과실을 포함하여 분쟁을 일거에 해결하는 데 이의가 없고 또한 현실적으로 분쟁의 효율적인 해결이 기대될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재산의 과실은 원칙적으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공동상속인들은 **공유물분할 또는 부당이득반환 등 민사상 청구**로써 자신의 상속분에 상응하는 부분을 지급받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공동상속인들은 상속개시 이후 상속재산의 분할이 확정될 때까지의 기간 동안 상속재산에서 비롯한 차임 등 과실을 자신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취득할 권리를 가지므로, 공동상속인 중 1 인은 다른 공동상속인이 그의 상속분을 초과하여 과실을 취득함으로써 자신이 자신의 상속분에 못 미치게 이를 취득한 경우에만, 초과 취득한 공동상속인에게 그가 초과 취득한 범위 내에서 자신이 취득하지 못한 상속분에 해당하는 과실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

실무적 함의는 피상속인 고인의 사망부터 상속대상 지재권에 대한 상속권리자가 확정되는 시점까지 그 동안 발생한 저작권료, 로열티 수입 등 수익은 상속재산분할이 아닌 법정상속분에 따른 공유재산분할의 방법으로 분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거액의 저작권료나 특허실시 경상 로열티 수입이 있는데 그 동안 상속관련 소송이 제기되어 장기간 판결이 확정되지 않는 경우, 상속재산분할과는 전혀 다른 내용으로 그 수익을 분할할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위 서울고법 판결 사례는 장남이 피상속인 어머니로부터 많은 재산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상속 당시 특별수익자 법리에 따라 더 이상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권리가 없었지만 상속분쟁 계속 중 발생한 빌딩 임대료 수익에 대해서는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다시 분배 받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기업법무, 기술법무, 상속분쟁, 계약분쟁, 손해배상, 민형사소송, 비용경감

T. 02-591-0657 E. kkh@kasanlaw.com H. www.kasanlaw.com